

1400 Merivale Road
Tower 2, 4th Floor
Ottawa ON K1A 0Y9
Canada

날짜 : 2023.10.31.

윤원습 국장님

농식품혁신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세종시, 대한민국

주제 : 한국 유기 동등성 인정

친애하는 윤국장님,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국 친환경농어업법”)에 기반하여 한국의 유기 생산, 표시 및 관리 제도를 검토하였습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캐나다 식품검사청법 및 캐나다 식품안전법에 따라 한국에서 최종 생산되고 취급된 유기 가공식품은 다음과 같다고 결정했습니다:

- (i)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의해 한국에서 적용중인 유기 규정에 부합함을 인증 받고;
- (ii) 농관원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유기증명서와 수출 증명서가 첨부된 제품,

캐나다 식품안전규정(SFCR) 제13장에 따라 생산되고 취급된 제품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국 유기 로고 뿐만 아니라 캐나다 유기 로고를 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캐나다에서 유기제품으로 판매, 표시 및 표현될 것입니다. 동 동등성 인정은 부속서 1의 요건에 따라서 2023년 1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부속서 2에 제시된 요건은 수입 유기식품에 적용됩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2023년 10월 31일 서한을 통해 농식품부가 캐나다 유기인증 제도의 동등성을 인정해주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캐나다 식품안전규정 제13장을 운용하는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동 협정의 조건을 이행하는데 농식품부와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Dr. Parthi Muthukumarasamy
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Programs Directorate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

부속서 1

동등성 인정을 위한 요건

캐나다 식품검사청과 농식품부는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동등성 결정이 아래의 요건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한다:

1. 농식품부는 다음 사항을 적절한 시기에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고지한다:
 - (i) 한국 권한당국의 변경사항과 농관원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의 변경사항;
 - (ii) 동 부속서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규정의 개정(안) 또는 제정;
 - (iii) 한국 유기인증 제도 관련 중대한 부적합 사례. 동 동등성 결정의 목적을 위해 위의 "중대한"이라는 표현은 동등성 인정 대상 유기 식품의 순수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적합 사례를 의미한다.

2. 농관원은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사전통지에 따라 농관원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한국 유기인증 제도의 요건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정기적인 평가(서류 또는 현장 방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관원은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이러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한다.

3. 농관원은 매년 전년도의 유기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제출한다.

4. 캐나다 식품검사청과 농관원은 동등성 인정의 이행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사안을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포함해, 동 협정의 적용 또는 해당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논의 및 기타 수단에 참여한다.
5. 만약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동등성 결정 기준을 변경하기로 정한다면,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농식품부와 농관원에 이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한다.
6. 캐나다 식품검사청과 농관원은, 2028년 8월까지 실무작업반이 협정문 효력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부속서 2

수입 조항

캐나다 식품검사청과 농식품부는 동 협정에 다음과 같은 수입 요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 (i) 한국 유기식품은 한국 식품공전에서 정의한 "가공식품"으로, 유기원료 함량이 95% 이상이고, 최종 생산과 취급은 한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ii) 유기식품은 한국 친환경농어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농관원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iii) 동 협정 조건에 따라 캐나다로 수입되는 한국 유기식품은 농관원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유효한 유기 인증서와 수출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제품이 동 협정의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한다;
- (iv) 캐나다로 수입되는 한국 유기식품은 동 협정에 따라 캐나다 식품검사청 유기 표시 조건에 따라 표시하고, 캐나다 유기 로고 또는 한국 유기 로고 또는 둘 다 표시할 수 있다.